글로벌 건강과 간호(Global Health and Nursing) 투고규정

제정: 2010년 06월 01일
개정: 2011년 03월 14일
개정: 2011년 07월 31일
개정: 2013년 02월 22일
개정: 2014년 10월 14일
개정: 2016년 01월 20일
개정: 2016년 10월 30일
개정: 2018년 03월 30일
개정: 2019년 09월 01일
개정: 2020년 11월 01일
개정: 2022년 05월 11일
개정: 2025년 12월 26일

발간목적

1. 글로벌 건강과 간호(Global Health and Nursing, Global Health Nurs)는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의 공식 학술지로서 간호 및 건강관련 분야의 양질의 논문을 발간함으로써, 간호 및 건강관련 분야의 연구, 이론, 실무, 교육, 정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학술지는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 발간한다.

윤리규정

1. 모든 원고는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SE,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 http://www.icmj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http://www.kamje.or.kr/)에서 권장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다.
3.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기술하고, 실험과정이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다.
4.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윤리규정에 따른다. 연구부정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연구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할 수 없다.
 2) 중복게재의 판정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는 학술대회 연제집 등의 형태로 초록이나 원고 중 일부가 발표된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4)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중복투고 및 중복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 및 심의하여 결정한다.
6.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된 경우, 윤

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윤리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저자 자격

1.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2.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만약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연구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저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4.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가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자 할 때 모든 저자의 역할을 기술하고 저자 순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단, 학위 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하며, 학위취득자가 제1저자가 된다.
5. 교신 저자란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심사, 출판과정 동안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6.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반드시 소속기관을 표기해야한다.
7.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논문에 기여한 자는 '사사표기'에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저자는 기여자에게 논문의 기여자로서 사사표기의 대상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지원기술

1. 저자는 투고 시, 원고의 작성과정에서 인공지능(AI) 지원 기술(예를 들어 Large Language Models [LLM], 챗봇 또는 이미지 크리에이터)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한다. AI 지원 기술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를 표지와 투고한 논문 내의 적절한 섹션 모두에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가 글쓰기 보조에 사용되었다면,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섹션에 기술한다. AI가 데이터 수집, 분석, 또는 그림 생성에 사용되었다면, 저자는 방법 부분에 그 사용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챗봇(ChatGPT 등)은 논문 저작물의 정확성, 무결성, 독창성을 책임질 수 없고, 이러한 책임들은 저자됨에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자 명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AI와 AI 지원 기술을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나열하거나 AI를 저자로서 인용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AI 지원 기술의 사용을 포함한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이해 관계

1. 교신저자는 논문투고시에 모든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충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해관계의 예에는 연구비 수혜, 고용, 주식보유, 강연료나 자문료, 물질적 지원, 겸직, 이익 경쟁, 지적 재산권 경쟁 등이 포함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이 원고 준비과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모든 저자가 확신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원고에 기술해야 한다.

원고 제출

1. 원고는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prins.medicallove.com/)에 접속하여 투고한다. 원고를 투고할 때 투고 전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편집자의 게재 여부 결정 및 재수정 요청을 포함한 모든 서신이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Tel: 051-510-8348, E-mail: rins@pusan.ac.kr)로 문의할 수 있다.
2. 본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명시에 대한 동의서를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학술지의 게재 가능한 논문의 종류와 출판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종류
 양적연구, 질적연구, 개념분석, Q방법론적연구, 도구개발연구, 체계적문헌고찰(SR), 메타분석, 종설 등
 2) 출판 유형
 ·Original Articles: 본 학술지에서 다루는 주제 중 독창적이고 수준높은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다룬 논문이다. 투고 논문이 도구개발연구일 때에는 원고 외에 부록으로 개발한 한글도구를 첨부한다.

·Review Articles: 간호 및 건강관련 분야의 이론, 실무, 교육과 관련된 주요 주제를 다룬다. 초청에 의한 원고가 아닌 경우, 주제가 시사성이 있어야 출판 대상으로 고려되며 전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논문의 본문 내용은 포괄적이고, 근거기반적 고찰과 비판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메타분석 또는 체계적 고찰인 경우에는 부록에 최종 분석대상 논문의 리스트를 첨부한다.

·Invited Articles: 간호 분야 연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제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초청한 전문가가 작성한 논문을 의미한다.

원고 작성

■ 일반사항

1. 원고는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으로 제출 시 편집위원회에 영문교정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2. 원고분량
 영문초록, 참고문헌, 표, 그림 등을 제외하고, 본문은 한글원고는 15쪽, 영문 원고는 6,000 단어 이하로 제한한다.
3. 원고편집
 A4 용지에 위쪽 30mm, 아래쪽 25mm, 왼쪽 25mm, 오른쪽 25mm로 여백을 설정한다.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 또는 MS wor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문 원고를 작성할 경우 MS word를 사용한다. 한글 서체는 신명조,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줄 간격은 200%(2.0)로 작성한다. 영문서체는 Times New Roman,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줄 간격은 200%(2.0)로 작성한다.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설정한다.
4. 학술 용어
 학술용어는 간호학 표준용어집(한국간호과학회) 및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5집 수정판)에 수록된 것을 준용한다.
5. 약어 사용
 영문 약자를 사용할 때는 처음 사용할 때에 단어 전체를 표기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제시한다. 단, 논문제목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표준약어와 단위
 표준약어와 단위는 Citing Medicine: The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제2판(2007)을 참고한다.
7. 띄어쓰기
 괄호()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띄어 쓰고, 국문이 올 때는 붙여서 쓴다. 괄호() 다음에 오는 조사는 붙여서 쓴다.
8. 연구 도구의 사전승인
 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구도구는 도구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기기 및 장비의 표기
 기계 및 장비의 경우 괄호()안에 모델명, 제조회사, 도시(주), 국적을 기재하고, 상품명을 뜻하는 TM, ⓡ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표기한다.

■ 원고의 구성

1. 원고는 겉표지, 논문제목, 영문초록, 본문, 표, 그림, 부록의 순으로 구성하며, 각각은 별도의 페이지에서 시작한다. 본문에는 무기명 심사를 위해 저자의 이름 또는 기관과 같은 신원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2. 겉표지는 다음을 포함하며 겉표지 양식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논문의 제목: 한글과 영어(영문원고는 영어로)
 2) 영문 단축제목(running title)
 3) 저자: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직장), 직위를 한글과 영어로 기재하고, ORCID번호,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여부를 포함
 4) 교신저자: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영어로 기재
 5) 논문의 종류: 양적연구, 질적연구, 개념분석, Q방법론적 연구, 도구개발연구, 체계적문헌고찰(SR), 메타분석, 종설, 기타
 6) 참고문헌의 수: 50개 이하
 7) 영문초록 단어 수: 250자 이하
 8) 주요어: 국문과 영문으로 5개 이내(MeSH 등재 용어)
 9) IRB 승인기관과 번호, 저자들의 연구윤리 준수
 10) 공시사항 : 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그 외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에 대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11) 저자됨과 논문기여도
3. 영문초록은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으로 구분하여 줄을 바꾸지 않고 연결하여 250단어 이내(제목과 저자명을 제외하고)로 기술한다. 원고의 내용에 부합하는 영문 주요어(Key Words) 5개 이내를 영문초록 다음에 기재하며, MeSH(https://www.ncbi.nlm.nih.gov/mesh/)에 등재된 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본문

1)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성한다. 단, 질적 연구의 경우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2)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
3) 연구방법: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자료수집, 윤리적 고려 및 자료분석 등을 순서대로 소제목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연구 방법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히 기술하여 재현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인 경우에는 참고문헌만을 제시하며, 새로운 방법이거나 기존의 방법을 변형한 경우에는 상세히 기술한다.
4) 연구결과: 처리된 결과를 중심으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도표에있는 모든 자료를 본문에서 중복하여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결과만 요약하여 적는다.
5) 논의: 연구 결과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서론과 결과에서 언급된 것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와 연관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며 결과의 적용, 제한점, 제언 등을 기술한다.
6) 결론: 연구 목적과 연관하여 최종 결론만을 간략히 기술하며 연구방법이나 결과 등을 반복기술하지 않는다.

■ 표(Table), 그림(Figure)

1. 표, 그림 등은 영문으로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한다. 5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표와 그림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2. 표 작성 원칙
 1)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하고, 종선(세로줄)은 긋지 않는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하며, 접속사, 관사, 전치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예: Table 1. Overall Responses to Question Types
 3) 표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4) 표에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설명한다. 다음의 기호(*, †, ‡, §, ‖, ¶, #, **, ††)를 순서대로 적용하며 설명은 표의 좌하단에 표기한다. 약어 풀이일 경우에는 기호 삽입을 생략한다.
 예: *Fisher's exact test; †p=.001; ‡p<.001.
 예: HR=Heart rate; T=Temperature.
 5) 소수점은 그 숫자 값이 '1'을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고, '1'을 넘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지 않는다.
 예: t=0.26, F=0.92
 예: p<.001, r=.14, R^2=.61
 6) 숫자 값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재한다. 단, p(유의확률)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002
 예: p값이 .000인 경우에는 p<.001
 예: p값이 1.000인 경우에는 p>.999
3. 그림 작성 원칙
 1)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위치하며, 첫 자만 대문자로 한다.
 2)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
 예: Figure 1-A, Figure 1-B
 3) 그림의 크기는 102×152 mm (4×6 인치) 이상이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203×254 mm (8×10 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조직 표본의 현미경 사진의 경우 조직부위명, 염색 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5) 그래프에 쓰이는 symbol은 ●, ■, ▲, ◆, ○, □, △, ◇의 순서로 작성한다.

■ 본문 내 문헌의 인용

1. 문헌의 인용은 Citing Medicine: The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제 2판(2007)을 참고한다.
2. 본문 내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 때는 인용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예: 스트레스 관리[1], 간호중재[2,3], 중환자 간호[4-6], 우울간호[7-9,11,13]
3. 본문에 문헌을 인용한 경우 문헌인용 순서에 따라 숫자를 괄호로 표시한다. 한 참고문헌이 본문에서 계속 인용될 경우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
4. 저자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하고,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부터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예: Beck [3], Jo와 Kim [7], Cox 등[11].

■ 참고문헌 목록

1.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50개 이하로 하고 본문번호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2. 참고문헌은 Citing Medicine: The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 Style Guide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 제2판(2007)에 따라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잡지인 경우는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전체 잡지명을 쓴다.
3. 저자가 7인 이상일 때에는 6명까지 모두 기입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표기한다.
 예: Wolchik SA, West SG, Sandler IN, Tein J, Coatsworth D, Lengua L, et al.
4. 디지털 학술정보의 용이한 활용, 검색의 효율성 도모, 인용 활성화를 위해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를 서지사항 마지막 부분에 기재한다. http://www.crossref.org 에서 DOI번호로 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
5. 영문명이 명확하지 않은 학술지는 인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기

1) 정기간행물

(1) 학술지: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연도;권(호):시작페이지-마지막 페이지. DOI 순으로 기재한다.

예: 저자가 6인 이하인 경우

Cho OH, Yoo YS, Kim NC. Efficacy of comprehensive group rehabilitation for women with early breast cancer in South Korea. Nursing & Health Science. 2006;8(3):140-6. https://doi.org/10.1111/j.1442-2018.2006.00271.x

예: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Bang KS, Kang JH, Jun MH, Kim HS, Son HM, Yu SJ, et al. Professional values in Korea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011; 31(1):72-5. https://doi.org/10.1016/j.nedt.2010.03.019

(2) 출판 중인 학술지의 논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Forthcoming. 지면 출간예정연월일. 순으로 기재한다.

예: 지면 출간일을 아는 경우

Heale R, Dickieson P, Carter L, Wenghofer EF. Nurse practitioners' perceptions of interprofessional team functioning with implications for nurse manager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Forthcoming 2013 May 9.

예: 지면 출간일을 모르는 경우

Scerri J, Cassar R. Qualitative study on the placement of Huntington disease patients in a psychiatric hospital: perceptions of Maltese nurses. Nursing & Health Sciences. 2013. Forthcoming.

(3) 잡지기사

저자. 잡지기사명. 잡지명. 연도 날짜: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Rutan C. Creating healthy habits in children. Parish Nurse Newsletter. 2012 May 15:5-6.

(4) 신문기사

기자. 기사명. 신문명. 연도 날짜;Sect. 란. 순으로 기재한다.

예: Cho C-u. Stem cell windpipe gives Korean toddler new life. The Korea Herald. 2013 May 2;Sect. 01.

2) 저서

(1) 단행본

저자. 서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p.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Peate I. The student's guide to becoming a nurse. 2nd ed. Chichester WS: John Wiley & Sons; 2012. p. 59-90.

예: Min KA, Kim CG. Nursing management. Jeonju: Knowledge & Future; 2012. p. 45-62.

(2) 단행본 내의 한 장(chapter)

장(chapter) 저자. 장(chapter) 제목. In: 편저자, editor(s). 서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p.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Miller CW. Applied cardiovascular physiology. In: Wingfield WE, Raffe M, editors. The veterinary ICU book. Jackson, WY: Teton NewMedia; 2002. p. 1-14.

(3) 편저

편저자, editor(s). 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예: Curley MAQ, Moloney-Harmon PA, editors. Critical care nursing of infants and children. Philadelphia, PA: W.B. Saunders Co.; 2001.

(4) 저자나 편집자가 없는 경우

서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예: Resumes for Nursing Careers. New York, NY: McGraw Hill Professional; 2007.

(5) 백과사전, 사전

(편)저자. 사전명. 판차사항.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편저자의 경우 기재 방식에 유의해서 작성)

예: Snodgrass, Mary Ellen. Historical encyclopedia of nursing. Darby, PA: Diane Publishing Company; 2004.

예: Fitzpatrick JJ, Wallace M, editors. Encyclopedia of nursing research. 3rd ed.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2.

(6) 번역된 책

원저자. 번역서명. 판차사항. 역자.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예: Stuart G.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9th ed. Kim SS, Kim KH, Ko SH, translator. Philadelphia, PA: Mosby; 2008.

3) 연구보고서

저자. 보고서 제목. 보고서 유형. 출판지: 기관(대학); 출판일. 보고서 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예: Perio MA, Brueck SE, Mueller CA. Evaluation of 2009 pandemic influenza A (H1N1) virus exposure among internal medicine housestaff and fellows. Health Hazard Evaluation Report. Salt Lake City, Utah: University of Utah School of Medicine, 2010 October. Report No.: HETA 2009-0206-3117.

4)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전체 인용문헌의 10%를 넘지 않는다. 참고문헌 내 학위논문 인용은 저자. 논문명 [학위 유형]. 출판지: 수여대학; 출판연도. p. 전체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1) 박사학위논문

예: Jin HY. A study on the analysis of risk factors and characteristics for nosocomial infection in intensive cure unit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05. p. 1-108.

(2) 석사학위 논문

예: Kim JS. A study on fatigue, stress and burnout of pregnancy nurses [master's thesi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 p. 1-50.

5) 이차 자료에서의 인용

이차 자료는 일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일차자료에서 인용되었음을 참고문헌에 밝힌다.

예: Gordis E. Relapse and craving: a commentary. Alcohol Alert. 1989;6:3. Cited by Mason BJ, Kocsis JH, Ritvo EC, Cutler RB. A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 trial of desipramine for primary alcohol dependence stratifi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major depression, JAMA. 1996;275:761-7.

6)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 (Proceedings)

(1) 미출간 구두발표자료 (Oral session)

저자. 발표 제목. Paper presented at: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일시; 학술대회 장소. 학술대회 지명. 순으로 기재한다.

예: Bryar R. The primary health care workforce development roadmap. Paper presented at: The public health nursing contribution to primary health care 3rd International public health nursing conference; 2013 August 25-1;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NUIG). Galway.

(2) 미출간 포스터 발표자료 (Poster Session)

저자. Poster 제목. Poster session presented at: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일시; 학술대회 장소. 학술대회 지명. 순으로 기재한다.

예: Bigbee J. Promoting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public health nursing leading the way.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public health nursing contribution to primary health care 3rd International public health nursing conference; 2013 August 25-1;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NUIG). Galway.

(3) 출간 발표자료

저자. 제목. 학술대회명; 학술대회 일시; 학술대회 장소. 학술대회 지명: 출판사; 출판연도. p.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Bell JM. Highlights from the 10th international family nursing conference. Making family nursing visible: from knowledge building to knowledge translation 10th international family nursing conference; 2011 June 24-28; Kyoto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Kyoto: Sage Publications; 2013. p. 135-9.

7) Web 자원

저자. 제목 [Internet]. 출판지: 출판사; 연도 [cited 인용 연도 날짜]. Available from: URL. 순으로 기재한다.

예: Statistics Korea. 2010 life tables for Korea [Internet]. Seoul: Author; 2011 [cited 2012 January 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252533

논문 심사

1. 투고 논문이 도착하면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내용이 '글로벌 건강과 간호' 발간 취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심사 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2. 투고 논문은 해당 분야 3인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기간은 평균 2개월이다.
3. 논문에 대한 심사자들과 편집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저자들이 원고를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이때, 저자들은 심사자들과 편집위원들이 제기한 논점들을 수정 원고에서 어떻게 반영 또는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로서 수정을 요구 받았을 경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수정 원고를 투고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주 이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원고 제출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단,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수정원고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4. 논문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심사규정을 따른다.
5. 논문의 게재료는 저자가 부담하고, 별책본은 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하며 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6. 심사가 진행된 이후 논문철회, 기간 내 미제출 등 저자의 귀책사유로 게재불가 시 해당 논문의 심사비는 저자가 부담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글로벌 건강과 간호(Global Health and Nursing)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5년 04월 01일
개정: 2016년 10월 30일
개정: 2022년 01월 01일
개정: 2022년 05월 1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에 따라 구성한 '글로벌 건강과 간호(Global Health and Nursing, Global Health Nurs)'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둔다.

1. 위원장은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간호과학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간호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간호과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되,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고 그 징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 간호대학(학과)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혹은 국제 전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혹은 학위논문의 심사 경험이 있는 자
 3) 학술지의 편집위원 경력이 있는 자
 4)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 갖춘 자
4.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편집위원(통계, 영문 등)을 둔다.

제3조(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학술지 발간
 1)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3) 접수료 및 게재료 결정
2. 학술지 평가 관련 준비
3.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4. 학술지 발간 관련 규정 검토
5.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과 관리)

1.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간호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 결정하고, 본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간호과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1) 박사학위소지자, 간호대학(학과)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자
 3)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 전문 학술지 또는 학위논문의 심사 경험이 있는 자
 4) 학술지의 편집위원 경력이 있는 자
 5)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 갖춘 자
3.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6.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심사결과 관리)

편집위원장은 투고자 및 심사위원과 주고받은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또는 문건을 보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글로벌 건강과 간호(Global Health and Nursing) 심사규정

제정: 2010년 06월 01일
개정: 2011년 03월 14일
개정: 2012년 06월 12일
개정: 2013년 02월 22일
개정: 2016년 10월 30일
개정: 2022년 02월 01일
개정: 2022년 05월 11일
개정: 2025년 12월 26일

제1조. 본 규정은 '글로벌 건강과 간호(Global Health and Nursing, Global Health Nurs)'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논문은 간호학 연구논문을 심사하며, 간호학 석·박사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4조.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논문은 연구 유형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제6조.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이 접수되면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논문 접수를 완료한다. 연구윤리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학술지의 윤리 규정에 따른다.
2.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가급적 배재하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1명의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심사위원은 온라인상으로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평가지, 본문수정사항, 수정보완사항을 2주 이내에 기록하여 심사를 완료한다. 단, 논문심사 기간은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1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다.논문이 투고규정에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5. 일정 기일이 지나도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탑재하지 않을 경우, 필요시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6. 심사위원 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연락한다.

제7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규정을 공정하게 준수하여 투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6)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위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8) 심사위원은 원고의 심사과정에서 인공지능(AI) 지원 기술(예를 들어 Large Language Models [LLM], 챗봇 또는 이미지 크리에이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제8조. 편집위원회 임원의 논문 투고 시,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배정, 심사결과 판정 과정에서 해당 위원을 배제시킨다. 편집위원장이 투고를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일인에게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 일체를 위임한다. 위임을 받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심사 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으로 결정한다.

1. 게재가능: 수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 가능: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 연구 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2)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3)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4) 저자가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심사결과서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6)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심사위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

논문제목 :

심사내용	답변 및 수정내용

제11조. 심사위원 3인에 의해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이 10일 이내에 최종 심의를 완료한다.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이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충실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시에는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다.

제13조.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논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사한 결과 유사도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내용은 저자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최종 게재불가 판정된 원고에 대해 교신저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단,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글로벌 건강과 간호(Global Health and Nursing) 윤리규정

제정: 2010년 08월 17일
개정: 2011년 03월 14일
개정: 2016년 03월 31일
개정: 2016년 10월 30일
개정: 2022년 02월 01일
개정: 2022년 05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의 공식 학술지인 '글로벌 건강과 간호'의 출판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8.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글로벌 건강과 간호'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출판과 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출판윤리와 연구윤리

제5조(출판윤리)
1. 모든 논문은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SE,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ICMJE, http://www.icmj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KAMJE, http://www.kamje.or.kr/)에서 권장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한다.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는 서면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기술하고,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RB)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심의를 통과 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다.

제6조(젠더의식)
투고자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사회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성(gender)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연구참여자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명백한 사유(예를 들어, 전립선 암)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제7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가진다.
2. 편집위원은 출판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필요할 때 논문을 철회하고 우려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인간대상 연구와 동물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은 출판을 위해 투고된 논문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위원 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

도 안 된다.

6)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위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제9조(저자)

1.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2.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만약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연구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저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2)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3)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4)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4.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가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자 할 때 모든 저자의 역할을 기술하고 저자 순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단, 학위 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하며, 학위취득자가 제1저자가 된다.
5. 교신 저자란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심사, 출판과정 동안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6.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반드시 소속기관을 표기해야한다.

제10조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칭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 작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1.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저자는 원고 겉표지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2. 투고 논문의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 인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기여자)

1.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논문에 기여한 자는 '사사표기'에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저자는 기여자에게 논문의 기여자로서 사사표기의 대상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제12조(논문 심사)

1. 투고된 논문 중에 학문적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접수단계에서 거절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가장 잘 심사할 수 있는 최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규정에 준하여 객관적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4.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 규정에 따른다.
5. 저자와 심사자는 모두 비공개로 한다.
6. 심사결과는 심사평과 함께 저자에게 통보된다.
7.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저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논문 철회)

1. 한번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출판을 철회할 수 있다.
 1)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3) 부당한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이 밝혀진 경우
 4) 사용승인 없이 데이터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5)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6) IRB, IACUC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심각한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7) 잘못되거나 조작된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이 게재된 경우
 8)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상충을 저자가 공개하지 않은 경우
2. 철회 공지문에는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사유 등을 명시하고 학술지 (출판물과 온라인판)에 공지 한다.

제14조(이해 관계 명시)

자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적 이해관계(연구비 수혜, 고용, 주식보유, 강연료나 자문료, 물질적 지원 등)와 개인적 이해관계(겸직, 이익 경쟁, 지적 재산권 경쟁 등)를 모두 보고한다.

제15조(저작재산권)

저자는 연구소에 논문의 저작재산권(출판권, 배포권 등)을 양도하고, 연구소는 동 저작재산권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저자의 기관에서의 사용을 허락한다.

제16조(우려표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1.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4.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7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18조(연구보조원)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19조(연구대상자)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5)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은 예외로 한다.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함)
 2)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3) 메타연구와 같이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4) 기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제20조(연구비)

1. 연구자는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자는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연구자는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소속)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소속되며,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22조(구성)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4인의 위원 중 2인은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2인은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임무)

위원회는 '글로벌 건강과 간호'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2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심의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심의신청서를 실명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연구위반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연구위반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피조사자는 편집위원회에 연구위반행위 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심의와 청문 및 판정

제28조(심의 절차)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의 절차를 거친다.
 1) 연구윤리 위원장은 심의신청서의 접수를 받고 심의 진행 계획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2) 위원장은 접수된 심의신청 내용의 정도를 확인한다.
 3)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의 소집 1주일 이내에 심의계획과 청문절차일정을 통보하고 1주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받는다. 책임저자(연구자)에게서 답이 없으면 공동저자(연구자), 기관 순으로 통보한다.
 4) 피심의인이 심의에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심의가 이루어진다.
 ① 제출된 자료 심의
 ②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서증, 검증, 감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의에 있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진술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진술로 한다. 단,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청문절차)

1.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판정)

1. 판정은 연구소장이 심의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판정까지 종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재심청구)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인적사항, 심의·결정 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 신청서 및 징계 결정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이후의 후속조치

제32조(심의결과 통보)

1.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3.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심의결과는 연구소장이 판정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1. 심의결과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되거나 피심의인이 이를 인정하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가벼운 조치의 순으로 기술한다. 단, 심의결과 후속조치는 재심청구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에 연구소장이 실시한다.
 1)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2) 중복 출판이나 표절에 대한 공지의 글 발간
 3) 부정행위의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발간
 4)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하여 2년간 본 학술지 논문 투고 자격 상실
 5) 학술지로부터 해당 논문의 공식적 철회, 혹은 취소와 함께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2.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취소 공지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논문 형태로 하고, 학술지 목차에 논문취소기사를 일반논문처럼 나열하여 색인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제34조(결정의 효력)
심의사항은 연구소장의 공표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징계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요청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자가 점검 사항

논문을 투고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양식에 표기(☑) 하십시오.
☐ 이 논문은 중복투고 논문이 아니며, 연구 및 출판윤리 규정을 준수함.
☐ 저작권이양동의서(e-mail로 보냄)

[겉표지]
☐ 제목, 상부표제, 논문의 종류, 주요어(한글, 영문)
☐ 전체 저자(한글,영문):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직장), 직위, ORCID번호
☐ 교신저자: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
☐ 참고문헌의 수
☐ 영문초록 단어 수
☐ 주요어(한글, 영문) 5개 이내(MeSH용어)
☐ IRB 승인기관 및 번호
☐ 공시사항(이해상충관계, 연구비 지원, 학위논문 등)
☐ 저자역할

[기본]
☐ A4, 10 point, 줄간격 200%, 여백, 쪽번호
☐ 전체원고의 투고규정 준수
☐ 원고분량은 영문초록, 참고문헌, 표, 그림 및 부록을 제외하고 한글원고는 15쪽, 영문원고는 6,000단어 이내
☐ 논문파일에 저자 인적사항 삭제

[영문초록]
☐ 250 단어 이내
☐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으로 구성하여 문단을 나누지 않고 기재
☐ 주요어는 MeSH에 등재된 용어를 원칙으로 5개 이내

[참고문헌]
☐ 투고규정 준수(잡지명을 full name으로 표기 등)
☐ 50개 이내
☐ 별도의 페이지 시작

[표 및 그림]
☐ 표, 그림에 대한 투고규정 준수 (총 5개 이내, 각 페이지에 1개씩)
☐ 약자 설명은 도표 밑에 기술
☐ 숫자 사용 시 단위를 표기
☐ 수치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오자가 없음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지원 기술]
☐ 원고의 작성과정에서 인공지능(AI) 지원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했을시에는 명시함.

이상과 같이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투고한 논문의 반송을 허락합니다.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

제정: 2010년 08월 17일
개정: 2022년 02월 01일

논문제목:

1. **저작권 이양(copyright transfer):** 본 논문이 글로벌 건강과 간호 학회지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을 글로벌 건강과 간호에 이양합니다.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본 논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권한을 소유합니다. 저자는 서면허가를 받으면 다른 논문에 본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모든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했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해 공적인 책임을 공유합니다. 또한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 할 계획이 없습니다.

2. **이해관계 명시(disclosure of conflict of interest):** 본 논문의 저자(들)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적 이해관계(연구비 수혜, 고용, 주식보유, 강연료나 자문료, 물질적 지원 등)와 개인적 이해관계(겸직, 이익 경쟁, 지적 재산권 경쟁 등)가 있는 것을 모두 명시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저자	날짜	이름	서명
제 1 저자	20 년 월 일		
제 2 저자	20 년 월 일		
제 3 저자	20 년 월 일		
제 4 저자	20 년 월 일		
제 5 저자	20 년 월 일		
제 6 저자	20 년 월 일		

*본 동의서에는 원고에 기술된 순서대로 모든 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건강과 간호 (Global Health and Nursing) 심사평가지

(양적 연구)

논문제목:_____

평가의 기준

항목 \ 점수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비해당
연구주제	1. 연구주제 선정이 적절한가							
	2. 연구 가능한 문제를 제기하였는가							
	3. 연구주제가 독창적인가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는가							
	2. 연구문제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료한가							
	3. 주요개념과 기존 연구와의 관련성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방법	도구개발 혹은 도구사용 연구	1. 도구의 타당성 검정이 적합한가						
		2. 도구의 신뢰성 검정이 적합한가						
	연구 대상자	3.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자인가						
		4. 표본추출방법이 적절한가						
		5. 표본수에 대한 근거가 서술되었는가						
	자료수집 및 분석	6. 자료수집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는가						
		7. 자료수집방법이 적절한가						
		8. 자료분석방법의 선택이 적절한가						
연구결과	1. 통계량이 정확하게 제시되었는가							
	2. 연구목적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는가							
논의	1. 논의는 결과에 근거하고 있는가							
	2. 실제 결과와 연구자의 해석을 구별하여 제시하였는가							
	3. 논의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였는가							
	4.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찰하였는가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이 적합하게 기술되었는가							
	2. 연구결과가 실무, 연구, 교육 및 정책 반영에 기여하는가							
기타	1. 참고문헌이 규정에 맞게 되었는가(학술지 투고요령 참조)							
	2. 영문초록이 적절한가							

게재 가능 여부 및 우수논문 추천	불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능	게재 가능	우수 논문

날짜: _____ 심사자: _____ 인

※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별지에 작성해 주십시오.

글로벌 건강과 간호 (Global Health and Nursing) 심사평가지

(질적 연구)

논문제목: _____

평가의 기준

항목 \ 점수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비해당
연구문제	1. 연구현상이 간호와 관련되어 명확히 진술되었는가						
	2. 연구주제의 유의성이 제시되었는가						
	3. 연구문제가 구체적이고 면담질문이 적절한가						
	4.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이 일치하는가						
	5. 연구방법에 대한 철학적 입장이 제시되었는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연구자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한 훈련과 준비가 충분히 기술되었는가						
	2. 자료수집방법은 적절하였는가(예: 면접, 관찰 등)						
	3. 표본추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4. 자료수집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는가						
	5. 자료분석의 모든 과정이 적절히 서술되었는가						
	6.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이 순환적 이었는가						
	7. 자료분석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논평과 대상자의 확인이 있었는가						
결과	1. 연구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는가						
	2. 연구결과가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는가						
논의	1. 밝혀진 현상에 대한 논의가 적절한가						
	2. 연구결과의 적용성(간호연구, 간호교육, 간호실무)이 제시되어 있는가						
	3.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결론	1. 결론이 적합하게 기술되었는가						
기타	1. 참고문헌이 규정에 맞게 되었는가(학술지 투고요령 참조)						
	2. 영문초록이 적절한가						

게재 가능 여부 및 우수논문 추천	불가능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능	게재 가능	우수 논문

날짜: _____ 심사자: _____ 인

※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별지에 작성해 주십시오.